

특허등록 지원사업 관리지침

서울시정개발연구원
서울경제연구센터

1. 개요

가. 목적

본 관리지침은 서울시산학협력사업운영요령(이하 '요령' 이라 한다)에 의한 사업 중 특허등록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나. 지원범위

1) 지원분야

서울소재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의 산학협력단 명의로 당해연도에 등록된 특허에 대하여 특허 출원비 및 등록비의 일부를 지원

2) 지원대상 선정

별도로 정한 절차와 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대상으로 평가전담기관의 서류검토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(단, 정부·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의 기 수혜 대상은 제외)

다. 지원내용

1) 지원규모

- 국내특허 : 서울시는 출원 및 등록비용의 50%를 부담하되, 건별로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
- 해외특허(PCT 포함) : 서울시는 출원 및 등록비용의 1/3을 부담하되, 건별로 7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

2) 지원기간

본 사업의 지원기간은 1년으로 하며, 매 분기별로 접수·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.

2. 추진절차



3. 협약

협약은 서울시장(관리전담기관장)과 주관기관장간에 매년 1회 일괄협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.

4. 접수 및 선정

가. 사업 공고 및 접수

1) 공고 방법

- 대학 산학협력단에 공문 및 e-mail 발송
- 서울특별시, 서울시정개발연구원,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홈페이지 공고
- 사업신청서 양식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

2) 접수 방법 및 접수처

- 각 대학 산학협력단에서는 해당 대학의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수합하여 평가전담기관에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
- 접수처: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39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'특허등록 지원사업 담당자' (137-071)
이메일 : coop@sdi.re.kr

나. 서류검토

- 1) 평가전담기관은 별도로 정한 절차 및 서식에 따라 신청된 사업신청서를 심의·검토할 수 있으며, 산업계에서의 수요 등 기술의 경제적 가치, 정부·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에서의 기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2) 평가전담기관에서 서류검토 후 정책위원회에 상정·심의한다.

다. 지원대상 확정

- 1) 시장은 정책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특허등록지원 사업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평가전담기관장에게 통보한다.
- 2) 평가전담기관장은 선정결과를 주관기관장과 관리전담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시지원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.

5. 시지원금의 지급

관리전담기관은 협약체결 내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지원금을 지급한다.

6. 시지원금의 반납

비용지원을 받은 특허기술의 기술실시계약 체결, 기술이전, 양도 등이 발

생한 경우 주관기관장은 관리전담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하며, 등록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지원금 전액을 관리전담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.

부 칙

1. 동 지침은 200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2. 준용규정

본 관리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'서울시산학협력사업운영요령'에 의거하되, 요령에도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과 주관기관장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고,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시장의 결정에 따른다.